

2021년 10차 노인분과 회의록

일 시	2021년 10월 12일(화) 14:00 ~ 15:00					
장 소	화상회의					
참석자 11/20 공(0/4) 민(11/16)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김선규(공공분과장)	X	김은주	X	장홍석	O
	최재우(민간분과장)	O	김장수	X	최성길	X
	이은주(총무)	O	서향숙	O	하창우	O
	이경미(공공)	X	신연경	O	한종민	O
	이명식(공공)	X	이민정	O	한지영	X
	장정오(공공)	X	인원교	O	황수경	X
김연주	O	임영신	O			
회의주제 및 안건	1. 보고 및 공유사항 1) 기관 행사 및 사업 보고 2. 안건 논의 1)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회의 결과

1. 보고 및 공유사항

- 1) 기관 행사 및 사업 보고
- 특이사항 없음

2. 안건 논의

- 1)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붙임1. 2022년 시행계획 수립안 모니터링 의견 정리

회의 사진



붙임1. 2022년 시행계획 수립(안) 모니터링 의견

연 번	사업 번호	중점 추진 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담당 부서	담당 팀	담당 자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	
								실무분과 모니터링 의견	사업부서 의견(후속조치)
추진전략 VIII. 노인 인권보호와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중심 고령친화 수원					김선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최재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부장				
59	8-1	중점	신규	노인복지시설 인권강화 사업 추진	노인 복지과	노인정책팀	방성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의 고립, 가정 내 학대 증가 등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증대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권교육 및 지침서 발간 등 관련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2년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됨. - 타 기관과의 서비스 중복 등으로 인하여 동일사업을 미추진하는 것은 이해 가능하나 노인인권교육의 경우 대상 및 내용의 다양화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인권지침서의 경우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수립되어 있음. 계획에 근거하여 2022년에는 제작·배포해야 하는 상황임. 이부분 누락 사유 확인 또는 보완하여 수정을 요청함. 	
60	8-2	중점	신규	수원시 고령친화 인식 확대	노인 복지과	노인정책팀	강진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추진의 제약이 있는 것은 이해함. 하지만 본 세부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법적 고민과 대응전략이 부족하다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지난 모니터링에서 제안했던 모니터단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여 계획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함. 	
61	8-3	중점	신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노인 복지과	노인정책팀	방성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 및 종사자 업무만족도 증대 등 효과가 분명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 	
62	8-4	-	지속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노인 복지과	노인정책팀	강진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고무적임. 2022년도에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함. 	
63	8-5	-	지속	노인문화축제	노인 복지과	노인정책팀	강진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의 경우 사업추진을 전제로 예산과 목표수준을 증가하여 계획 수립됨. 단,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노인의 경우 감염병 취약대상이며 다중집합 행사에 대한 제한은 쉽게 철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를 고려한 차선책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임. 	
64	8-6	-	지속	어버이날 행사	노인 복지과	노인정책팀	강진슬		